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유동물이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의무 부과〉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99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보유동물이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의무 부과 ...	2
※ 참고자료	7
1. 동물원 현황 및 관리체계	7

I. 제안경위

2026년 4월 29일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포획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최근 대전 오월드에서 늑대가 사육 및 관리구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동물원 측의 관리부실 뿐만 아니라 초동대처가 미흡하여 40분 뒤에나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동물원을 관할하는 소방서와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보유동물이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의무 부과

개정안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보유동물이 사육 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에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안전관리) ① (생략)	제16조(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에는 <u>제8조에 따른 허가 시 제출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② ----- ----- ----- ----- ----- ----- <u>-지체없이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관할하는 경찰서 및 소방서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u> <u>고, 제8조에</u> ----- ----- ----- ----- -----.

현행	개정안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¹⁾는 질병·안전관리의 취약성, 상업적 목적에 치중한 일부 소규모 동물원·수족관의 운영, 보유동물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전체회의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의결한 바 있음²⁾.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주요 내용]

- (등록제 → 허가제) 전문인력 기준 강화, 질병·안전관리계획 및 휴·폐원 시 보유동물관리계획 제시 등 구체적 허가요건 명시
- (검사관/거점동물원 제도 도입) 전문가 그룹인 검사관 자격 및 업무수행 범위*, 권역별 거점동물원** 지정
* 동물원 현장조사·평가 등 지원, ** 권역내 교육·홍보·자문 및 질병·안전관리 지원
- (휴·폐원) 휴원신고 요건 강화(연속 6개월 이상 미개방 사유 발생→연속 3개월 이상 미개방 사유 발생) 등
- (금지행위 및 질병관리) 올라타기 등 금지행위 추가,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정기적 검사 의무화
- (의무교육 등) 동물원 근무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기록물 보유기간(3년→20년) 확대 등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 의결시점 명칭은 환경노동위원회였음.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2022.11.10.전체회의 의결, 2022.11.24. 본회의 의결)(법률 제19086호, 시행 2023. 12. 14.)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질병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³⁾.

또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에는 허가시 제출하였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⁴⁾.

3) 민영동물원·수족관의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이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공영** 동물원·수족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권자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및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
 2.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3.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4. 동물원의 휴·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폐관(이하 “휴·폐원”이라 한다)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5. 그 밖에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전관리)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허가 시 제출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동물원·수족관 안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의 포획·격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그러나 최근 대전 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및 포획사건에서 해당 동물원이 관련 사실을 소방당국에 40분이 지난 뒤 신고하여 초동 대처가 지연되었다는 지적이 있음⁵⁾⁶⁾.

이에 개정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보유동물이 사육구역이나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 외에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신고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동물 복지를 제고하고 주변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신고대상에 경찰서 및 소방서의 장뿐 아니라 ‘허가권자’도 추가하여, 사고 사실을 즉시 파악하고 추가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 등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⁷⁾.

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연합뉴스, 「퓨마에 늑대까지...대전 오월드 맹수 탈출 사고 또다시 반복」, 2026.4.8. 최종접속 2026.7.1.

6) 2026년 4월 8일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하였음이 신고되었고, 이후 비상대책본부(대전시, 기후부, 오월드, 소방, 경찰 등)와 국립생태원, 야생생물관리협회의 전문인력 등과 함께 수색을 실시하여 2026년 4월 17일 마취총을 사용하여 늑대를 생포함.(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존중받는 동물, 안전한 동물원 조성 앞당긴다」, 보도자료, 2026.4.22.)

문 의 처

02)6788-5541

- 7) 참고로, 현행법상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3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개정안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필요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고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필요성은 일부 있으나 ‘지체 없이’의 판단기준은 탈출 인지 시점, 개체 위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동물원 내부 통제 가능 여부, 해당 개체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용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참고자료

동물원 현황 및 관리체계

□ 동물원 현황

- '25.12 기준 전국 동물원 **121**개소(공영 27개, 민영 94개) 운영, 공영동물원은 유역·지방청, 민영동물원은 지자체가 관리·감독

※ 보유동물은 '25.12 기준 57,362개체(포유류 12,451, 조류 12,573, 파충류 3,802, 양서류 1,042)

< 규모별 동물원 현황 >

구분	계	대형	중형	소형
공영	27	11	14	2
민영	94	6	28	60

※ 규모 : 대형(10,000m² 이상), 중형(1,000~10,000m²), 소형(1,000m² 미만)

□ 동물원 관리체계

- (허가제 전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22.12.13) 및 시행('23.12.14)에 따라 허가제 도입, 허가권자는 검사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허가 여부 검토

* 동물원 허가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 서식환경·전문인력 등 허가요건* 충족 시 동물원·수족관 설립이 가능하며, 기존 동물원은 5년 내 허가를 받도록 유예(~'28.12)

* 동물서식환경 및 전문인력 기준, 질병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 동물관리계획 등

< 동물원수족관법상 허가기준 개정 내용 >

구분	기 준 (등록기준)	개 정 (허가기준)
서식환경 기준	< 신 설 >	• 보유동물 종별 기준 규정 * 세부기준은 허가업무지침에서 구체화
전문인력 기준	• 사육사 : 1~3명(40종 미만 1명 / 40종~70종 2명 / 70종 이상 3명) • 수의사 : 1명(축탁수의사 허용)	• 사육사 : 2~6명(70종 미만 2명 (위험동물 보유시 3명), 70종 이상 6명) • 수의사 : 1~2명(위험동물 보유시 2명)
질병·안전 등 관리 계획	• 자체 수립 후 이행	• 허가 시 계획의 적절성 평가

- (관리) 허가권자의 정기검사(매 5년) 및 수시검사(필요시) 실시

※ 위반사실 발견 시 시정명령 등 **조치명령** 가능, 조치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영업정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